

재심사

재심사란 무엇입니까?

재심사란 청문회 행정 사무국(OAH: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또는 부서에 최종 청문회 결정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귀하 또는 리저널센터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무상 오류가 있음
- 사실 관계의 오류가 있음
- 법률적 착오가 있음
- 청문회 담당관이 스스로 결격 처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음

재심사는 어떻게 요청해야 합니까?

청문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상 또는 법률 관계의 오류나 법률적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문회 담당관이 스스로 결격 처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는 중재자 또는 청문회 담당관이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귀하가 다른 중재자 또는 청문회 담당관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요청서 사본을 리저널센터와 발달장애서비스부(DDS) 또는 OAH로 보내야 합니다.

재심사 요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리저널센터는 요청서에 대한 반박 또는 지원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담당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다른 청문회 담당관이 재심사 요청서를 검토합니다.

재심사를 적시에 요청한 경우 현재 서비스(미결 상태 지급 보조금)는 재심사 결정 10일 후 다시 이어집니다.



재심사 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거부됨
- 승인되어 결정이 수정됨, 또는
- 승인되고 같은 사안을 다룰 새 청문회 일정이 지정됨. 요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후 1일 이내에 귀하 및 리저널센터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재심사 결정은 귀하의 선호 언어로 제공됩니다.

재심사 결정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사무상 또는 사실 관계의 오류 또는 법률상 착오를 정정하는 결정을 귀하, 리저널센터 및 발달장애서비스부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을 받는 방법

이의 제기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다음 링크에서 지원 받기(Getting Help) 탭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터만법 관련 이의 제기 정보 패킷\(Lanterman Act Appeals Information Packet\) -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서비스부\(C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